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0월 8일(주일) 제1461호



사진은 지난해 러브소나타 '미야기'.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 33회 러브소나타 '미야기' 10월 11~12일 센다이 선플라자를 리바이벌나이트, 소셜 액션 세미나, 러브소나타 집회 등 개최

러브소나타 '미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11일(수)과 12일(목) 일본 센다이 선플라자에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New Beginning)'를 주제로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한다. 10월 11일(수) 리바이벌나이트(한일연합성령집회)가 러브소나타 '미야기' 포문을 연다.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미디어본부장)와 다카하시 켄 목사(니시타가성서법테

스트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12일(목)에는 소셜 액션 세미나, 패널 디스커션, 런치 네트워킹,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러브소나타 집회 등이 막 오른다. 소셜 액션 세미나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와 오토모 마사유키 목사(시오가마성령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에서는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와 마츠다 마키토 목사(오아시스교회), 러브소나타 집

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사랑채버, 가수 루나, 개그우먼 조혜련, 하다쉬뮤직, 소프라노 김영미, 소라토리, CRUX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자들은 여권, 상비약, 메모 수첩(여권번호, 연락처 등 기록) 등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러브소나타 본부에서 나눠주는 명찰은 항상 차고 있어야 한다(행사장 출입증).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상의 단체복 티셔츠, 하의 겹장 또는 군청색 계열 바지를 입어야 한다.

이정환 목사(러브소나타 담당)는 “러브소나타 '미야기'는 일본에서 33번째로 열리는 문화전도집회”라면서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일본 미야기현은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 있는 현으로 현청 소재지는 센다이시이다. 미야기현은 아름다운 여

행지로 유명하다. 아픈 기독교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쿠가와 막부의 기독교 탄압으로 1639년부터 1년 동안 성도 309명이 순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한국로잔 생명위원회 ‘생명포럼’

10월 21일 오후 2시 서빙고

한국로잔 생명위원회에서 생명에 대한 논의와 생각을 나누는 ‘생명포럼’을 개최한다. 10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지하 1층)에서 열린다. 한국로잔 생명위원회 ‘생명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38-0807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

11월 5일까지 오전 9시 명동성당 들머리 앞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이 한창이다. 11월 5일(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 앞(서울 중구 명동길 66, 농협은행 건너편)에서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에서 기도문을 다운로드 받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문에는 미국과 한국의 낙태 현황, 기독교 생명윤리 관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 기도제목 등이 담겨 있다.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 현

장 릴레이 기도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현장에 비치된 기도문을 읽고,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된다. 현장 릴레이 기도에서는 전 세계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종식을 위해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은 가장 첫 번째 인권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도한다. 위기 임신지원센터 봉사 활동도 한다. 문의: 02-703-4620 / 홍하영 기자

###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양재온누리교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성도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문제 인식을 위한 주제별 사전 강의(성경적 결혼·출산, 자녀 교육, 세계관,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주제 강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을 대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돌파하기 위한 성경적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사 당일 우수작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로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 제직회

일시: 10월 22일(일) 오전 10:3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안간: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안 심의  
대상: 모든 제직

### 공동의회

일시: 10월 22일(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안간: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안 심의  
대상: 만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기도를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때로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를 제하시며,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도를 늦추시는 것은 답답함이 아니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걸음 내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17절).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과 상의하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21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거워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입니다. 악해져간 도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 소

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올바른 시각,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물질적인 번영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복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복의 기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모든 나라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시각을 바꿔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 땅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견을 기다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견

오늘 본문은 하나님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견입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또 강하게 항변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전적인 태도를 거부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살피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앞선 기도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말씀에 대해 던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 안에서 의인 50명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다시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10명 적은 40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즉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40명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10명을 줄여서 30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10명을 줄여 20명, 또다시 10명을 줄여 10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내가 의인들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중보자

창세기 18:16~33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살려 주셨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내려서 “의인 1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라고 간구했다면 어떻게 응답 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의인 1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은 의인 1명이 없어서입니다.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악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제 ‘의’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억울하게 멸망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은 마땅히 멸망해야 하지만, 의인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흥정 같은 기도에도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이 세상은 멸망 받아 마땅하지만, 이 세상에 의인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 심판에 이르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

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의는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 없고, 악인은 의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계속 응답하신 이유는 구원의 법칙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 받을 죄와 악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나라에 주신다고 하는 복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복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언약의 중보자로써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먼저 중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구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면 귀 기울여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죄인을 용서하고 대속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살리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약의 축복, 언약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한 세상, 멸망 받아 마땅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특별기고

## ‘온누리 미래&amp;가족 축제’의 의의 1

# 초저출산 문제 극복,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하선희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사람들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한다. 반면 성문화는 매우 문란하고, 동성애나 양성애가 흔하며, 피임과 낙태가 일상이자, 영아 유기도 속출한다. 저출산이 심각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만 효과가 없어서 이 민에 의존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요즘 세상 이야기 같지만, 이는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에서 기록한 로마 제국의 모습이다.

율리우스 시저(BC59)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아버지에게 토지를 주는 법안을 발효시켰고, 독신을 불법화하지는 키케로의 제안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아우구스투스(AD9)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아버지에게 정치적 우선권을 주고, 자녀가 없는 부부나 미혼인 남성(만 25세)과 여성(만 20세 이상)에게 정치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법을 공포했다. 이후 황제들도 비슷한 정책을 계속 실행했고, 트리아누스 황제는 상당액의 자녀 수당을 지급했다. 물론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었다. 그나마 끊임없이 유입되던 ‘아만인 정착민’ 덕분에 근근이 버티던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한다.

그리스 로마 사회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에게만 정절을 요구하면서 남성은 매우 문란한 생활을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결혼 자체를 낮게 평가했던 남성 지향적 문화, 영아 살해, 낙태, 산아 제한이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 남성은 결혼을 하더라도 보통 아주 단순한 가정을 꾸려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가족 당 평균 세 자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거기다 원하지 않는 딸과 장애가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버리는 게 일반적 관행이어서 살아남는 아이보다 태어나는 아이가 많았다. 기원전 1세기 힐라온이라는 사람이 장기 출타 중에 임신한 아내 알리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이다.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소... 우리의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주시오. 돈은 받는 대로 보내주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면 키우고 여자면 버리시오. ‘날 잊지 말아요’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런 걱정일랑 마시오.”

버려진 아기들은 대개 바깥 낚시나 새, 짐승의 희생양이 되었다. 근래 발굴된 아슈켈론의 한 항구 도시의 고대 목욕탕 하수구 유적에서는 기원후 6세기 시점에 살해돼 하수구로 던져졌다고 보이는 100구 가까운 신생아 뼈가 나왔다.

그리스 로마 사회의 출산력이 크게 저하한 또 하나의 요인은 너무 흔했던 낙태였다. 당시 문헌에는 치사량을 살짝 밀도는 독약 사용 등 깜짝 놀랄 다양한 낙태 기법이 상세히 남아 있는데, 낙태는 당시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

다. 자신의 조카 줄리아를 임신시킨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낙태를 명령해서 그 조카가 사망했다.

한 인구 집단의 재생산 능력은 가임기 여성의 비중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는 여아 살해 등 심각한 여성 부족 상태(135남:100여)에다 그나마 가임기 여성은 낙태나 피임 등의 부작용으로 불임 상태가 많았다.



##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반출산적 문화를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온 땅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말씀을 따라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변화시켰던 초기 기독교의 선례

그런데 동시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지켰던 기독교인은 로마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기독교의 고출산율의 주요인은 결혼이라는 구속을 신성시하는 문화였다. 기독교인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음란도 정죄하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도 강조한다. 기독교는 성행위의 주목적은 재생산이며, 자녀를 가지는 것이 결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낙태와 영아 살해는 살인으로 절대 금했고, ‘오난의 예(창 38:4~10)’와 같은 산아 제한에도 반대했다. 2세기 말부터 기독교인은 단지 낙태와 영아 살해 거부를 천명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교도와 이교를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은 길가에 버려진 아기들도 데려다 길렀다. 이처럼 영아 살해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건강하던 그렇지 않은, 부유하던 가난하던 상관 없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기독교인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끝났다.

또한 이러한 출산 친화적 문화 덕분에 기독

교 여성은 불임이 될 확률이 훨씬 낮았다. 게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개종의 성별 편향성이 합쳐진 결과, 남초 사회였던 로마에서 “결혼을 하려면 교회로 가라”는 말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여성이 많았다. 기독교 공동체 내 높은 여성 성비는 여성의 지위 신장에도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초기 교회에 상당 규모의 2차 개종자를 유입시켰다고 알려져 있

티비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슬람이 유럽화 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이 이슬람화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이민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상황은 로마 당시 인구 통계학적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로마가 단순히 사회의 혜택을 원했을 뿐 파괴할 의도는 없었던 이민자의 유입으로 점차 변하고, 결국 붕괴한 것과 같은 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가 너무 많다.

## 10월 28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초저출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비단 이민뿐 아니라 너도나도 각자가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쏟아 놓고 있다. 하지만 <사사기>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준다. 사람을 만든 신 분이 하나님이다. 따라서 인류의 번영에 대한 최고의 해법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초기 기독교 발흥의 역사는 초저출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극명한 좋은 선례이다. 그래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이다. 게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제1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는 10월 28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행사에 앞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을 대상으로 ‘이 시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주제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돌파구의 성경적 제안에 대한 공모전을 열고 선정된 우수 공모작을 행사 당일 발표한다. 그 외에도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제별 사전 강의 및 발표회, 근본 원인과 해결 방향에 관한 주제 강의(교회의 현황 및 성경적 해결 방향),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패널토의 시간도 갖는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를 만든 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성경적으로 신실한 삶을 산다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인기 있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부패하고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더 많이 낳았고,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 키우며, 경건한 자손을 이어 가면서 과하게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들이 결국 이겼다. 300년이 넘게 걸렸지만 결국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다.

로마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쳤던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에게도 용기와 인내, 신실함이 필요하다. 많은 성도들이 이 포럼에 참가해서 그 지혜를 얻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반출산적 문화를 회복시키고, 경건한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온 땅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다. 게다가 기독교 여성의 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출산률로 귀결되었다. 이는 곧 우월한 출산력이 기독교의 발흥에 일조했다는 뜻이다.

로드니 스타크가 위 내용의 책을 쓸 당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변방의 소수 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서양 문명의 중심으로 단기간에 부상했는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그가 발견한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교리대로 실제 살아 낸 결과 제국이 멸망하는 속에서도 말 그대로 발흥했다는 사실이었다.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글렌 선샤인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서 “서구 문명은 로마 문명과 기독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서구 세계관에 미친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가 로마에 더 가까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두에 묘사한 로마 제국 당시의 상황이 친숙한 이유는 우리의 문화도 성적으로 과포화 상태이지만, 출산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낫다 해도 거의 모든 주요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을 밑돈다. 유럽은 이미 이민에 많이 의존한 결과 이슬람 학자인 바삼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문화와 신앙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적 혹은 정신적 산물 즉,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culture)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의 식물을 땅에 심고 기르는 경작함(colrere), 어디에 거주함(colonus), 경의를 표하고 예배함(cultus)이라는 세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위의 다양한 어원을 많은 학문영역에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은 자연이나 인공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숙련된 솜씨로 표현해서 보여 주는 것으로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은 진선미 중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진리와 선함을 동시에 포함하게 마련이다.

예술에서 말하는 문화는 세련된 취미나 교양과 관련이 있다. 음악, 미술, 시와 같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듣고, 즐기고, 생각하고, 서로 권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경배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세속의 예술 역시 작가의 갈고닦은 솜씨로 감탄을 자아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진리와 선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아름다움을 경배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기 쉽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문화는 예술에서 말하는 문화보다 광범위하다. 인류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만들어 낸 모든 유형형의 산물을 가리킨다. 의식주, 관혼상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요즘의 사회과학에서는 모든 문화를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려 한다. 그러나 상류 문화와 대중문화, 선진문화와 원시 문화, 교회문화와 세속문화 같은 분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화에 대한 우열, 선악, 호불호의 가치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문화와 세계관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

주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재생산한다.”

문화연구에서 말하는 문화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등장했다. 이는 권력이나 정치가 인종, 계급, 나이, 성, 직업 등 사회의 많은 분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한다. 이 분야가 복잡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 사이의 관계가 동적으로 발전하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 문화연구자들은 글로벌(global) 세상 즉, 세계적 영향과 지역적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문화의 혼합을 말하는 잡종성(hybridity),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선(liminality)에 있는 문화의 개념은 현대 문화의 복잡함과 혼란함을 보여 준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정의도 학문 분야마다 다르고, 우리는 모든 게 뒤섞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문화와 세계관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 주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재생산한다. 오늘날 세속 문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로 인해 세속화 경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속문화의 폭풍은 인터넷과 SNS라는 전염력이 강한 매체를 통해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성-결혼-가정-생명을 해체하는 성 혁명 이념 전파 측면에서 교회를 강타하고 있다.

오늘날 MZ세대는 웰빙(well-being)을 가족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늦게 하든지 아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결혼 전 평균 5~6년을 이성과 사귀다. 결혼을 미루는 게 성 관계를 미루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러한 유례없고 강력한 세상 문화의 도전에 직면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속문화의 강력한 폭풍 앞에 두려움으로 무력해질 수 있다.

이 폭풍에 맞서기 위해 엘버트 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라고 추천한다. 첫째, 교회 생활을 그 가정의 일주일 일정 중에서 가장 우선에 배정한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귀가해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함께 교회의 안전한 연장자들의 보호 아래 또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격려해야 한다. 세속의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불러내 복음 가득한 공동체 문화 속에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둘째, 자녀들의 스마트폰, SNS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속 문화가 자녀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통로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복음의 향기로 집안을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예배, 경건의 시간, 성경 암송, 가족들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자녀들에게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심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어 찾는 보물이 세속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구감소,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

## 저출산 문제, 교회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정상원 집사  
(강남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언급한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을 한국 사회가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다. 인구절벽에서 떨어져 민족이 소멸할 위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할 힘과 의지가 있는지 아직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가 줄어들고, 생산인구가 부족해 경제가 멈추게 된다는 사실은 기독교인과 교회에게도 동일한 문제다.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순종 도구로 쓰임 받을 때였다. 만일 저출산 문제를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세속적 분석 틀에서 벗어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출산을 설명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크게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져온 생활 양식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족 내 돌봄 인력의 부족으로 축약할 수 있다. 먼저 생활의 편리와 개선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돌이켜 자급자족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환경을 위해서 덜 쓰고, 재생하고 공유해서 쓰는 게 필요하겠지만, 산업구조를 과거로 회귀시킬 수는 없다. 또한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3대가 함께 살던 확대가족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사람들이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핵가족을 이루는 가족의 소규모화를 겪었다. 이제는 높은 비혼율과 이혼율로 인해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 되어가고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공동체의 따뜻한 시간을 나누어주는 것이 답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하는 집단주의가 강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친 국가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세해진다. 개인주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폭정,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한 전체주의에 맞서는 개념으로, 개인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하는 사회적 원자화, 공동선과 약자돌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설명하는 부정적 의미로 혼용되기도 한다. 개인의 유익과 사회적 유익이 갈등할 때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을 우선하고, 특히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때 더욱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작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족 내 돌봄 인력의 부족’은 여성에게 충분한 지원 없이 희생을 요구해온 데 대한 저항과 개인주의가 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출생률 조절의 필요성을 훨씬 오래전에 체감한 서구 사회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을 독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도 남녀 구분 없이 가사와 육아를 당연히 함께하는 일로 인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부에게 자녀를 갖는 일은 여전히 경제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도전이다. 그들에게 특히 부족한 것이 시간이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장 절박했던 산업화 이전에는 공간에서 인심이 났다. 종일 굶다가 친구가 이끌고 간 교회에서 입만 가득한 초코파이의 행복한 단맛을 경험했던 성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싶어졌다. 자기 자식을 먹이기도 충분하지 않던 시절 성도들의 헌금이 그들의 생명이었었고, 그 생명으로 전달된 초코파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메타포(metaphor)가 되었다.

온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법을 제시한다면, 자녀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공동체의 따뜻한 시간을 나누어주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교회의 비전을 차세대 양육과 지원에 둔 안산의 K교회는 성도들의 평균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라고 한다. 교회에는 평일에도 아이를 안고 나온 부모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교회에 오면 자녀를 기르며 느끼는 신앙적 어려움이나 양육 문제 등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의 아이를 잠시 맡아주기도 하며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손을 쉬게 해 준다. 맞벌이로 아이와 눈 맞춤할 시간이 부족한 가정,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염원하는 지역사회 가정을 교회가 따뜻하게 반기며 넉넉한 시간을 내어 주는 사랑방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맛있는 말씀 해설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나 1:2).

〈나훔〉은 앗수르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서다. 〈나훔〉 1장 2절에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참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세 가지 논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이해하기 힘든 역울한 일을 경험하면 속상하거나 화가 난다. 하나님도 세상의 여러 사건에 기쁨, 분노, 슬픔 등을 느끼는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를 무감동성(impossibility)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의인화해

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직전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둘째,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상황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구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주로 이방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질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는 부부간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한다. 죄를 지어 더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사랑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당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보복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반드시 공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따라서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인 동시에 약자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언약으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셋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굳이 질투와 분노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투와 분노가 기독교인들이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노와 질투 역시 인간이 느끼도록 주신 감정이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자기중심적으로 길들었다는 것이다. 마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익숙해져서 정작 음식 재료 맛을 전혀 못 느끼듯이 말이다. 자기중심으로 길들은

기쁨은 세상 즐거움을 경험할 때만 반응하도록 왜곡되어 버렸다. 참 기쁨이신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이다(마 11:17). 질투와 분노 역시 이기적인 감정으로 여겨져 기독교인들이 품지 말아야 할 감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감정을 느낀다면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감정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때 성경이 이전과는 또 다르게 더 깊은 차원으로 이해될 것이다.



최용준 목사  
(강남B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지혜의 부름

10월 9~15일  
〈잠언〉 5:1~9:18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자녀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삶은 성적 유혹을 피하는 데서 시작된다. 〈잠언〉 기자는 음녀(창녀)에게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음녀에게 빠진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듯 〈잠언〉 기자는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간교한 음녀에게 유혹되어 성적 타락에 빠지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길 때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 품을 족하게 여겨야 한다. 음녀를 피할 길은 아내와 함께 즐겁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묵상포인트 2:** 〈잠언〉은 재정 보증, 게으름, 언어생활, 성(性) 등에 관한 실제적 교훈을 언

급한다. 특히 음녀와 성적 타락 주제를 세 번이나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내가 금할 것과 피할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자신이 한 말로 잡힌 것이기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웃에게 겸손히 간청해야 한다. 게으른 자는 개미를 통해 배워야 한다. 게으름에 빠져 더 자고, 졸고, 누워 있다 보면 가난과 결핍이 어느 순간 찾아온다.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과 이간질하는 자를 멀리해야 한다. 간음은 타오르는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고, 뜨거운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 성적 타락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묵상포인트 3:**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의인화할 뿐 아니라 1인칭 화법을 사용해 지혜가 얼마나 간절히 사람들을 찾는지 묘사한다.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면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다. 지혜의 초대와 미련함의 초대가 어떻게 다른지, 그 결과가 어떻게 극명히 나뉘는지, 성도의 바른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자.

▶지혜가 눈에 띄기 쉬운 길가, 높은 곳,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부른다.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고, 세상을 창조

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서 함께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 반면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며,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유익이 되고 생명의 날이 더해지지만, 거만한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 묵상을 위한 가이드

▶성경은 “음녀를 피하기 위해 부부 관계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배우자와 나눠보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요소 중에서 내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자. 내 눈과 혀와 손과 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고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미디어와 불건전한 습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단호히 끊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자.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대중대중 하려는 습관이나 게을러서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자. ▶날마다 지혜의 말씀이 초대하시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매일 QT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건강을 위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메니에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메니에르’의 증상은 난청과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감기약만 먹어도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상을 멈추고 잠시 입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좋지 않은 결과만 들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내년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쓰러지면서 공부할 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파서 쉬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진도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공부하도록, 또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의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어지럼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메니에르’라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유학을 잘 준비하도록, 저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도록 기도해주세요.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가족과 함께 떠나는 10월 신앙교육여행



1907년 장로교의 첫 노회(독노회)의 중요한 결의사항 중 하나는 안수 받은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 이름으로 제주도에 파송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제주도는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섬이지만 당시에는 너무 다른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방언이 특이해서 그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선교지’였다.

제주도의 첫 목회자였던 이기풍 목사는 입도해서 전도활동을 펼치며 성내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을 이어갔지만, 제주도의 풍토(문화, 언어 등)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결국 병을 얻어 1915년 전라노회에 병가를 청원하고 떠났다. 12년 뒤 이기풍 목사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사역했는데, 4년 뒤 다시 떠났다. 이와 같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사역을 나온 목회자들이 제주도

이도종 목사와 제주 ‘대정교회’

만의 특별한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문제, 풍토병,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목회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머물다가 돌아오는 경우 목회지, 견습 선교지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제주도 교회가 찾은 목회자의 교체라는 환경을 갖게 했고, 지역에 신뢰를 줄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돋보이는 목회자가 한 명 있었다. 바로 이도종 목사다. 이도종 목사는 지난달 소개했던 제주도 최초의 교회인 ‘금성교회’의 설립을 같이 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기까지 했던 기동 같은 일꾼 이덕련의 큰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이도종은 이기풍 목사의 도움으로 평양 숭실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집안사정으로 귀향했고, 제주도에 돌아와 전도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후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했다. 김제읍에서 사역하다가 제주도로 내려와 10개 교회를 개척했고, 21개 교회를 섬겼다. 제주민을 위한 사역을 일평생 펼쳤다.

이도종 목사는 첫 번째 제주도민 목사, 일평생 제주도에서 사역했던 목사, 나이가 첫 번째 제주도 순교자라는 이름만으로 기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신앙교육여행에서는 이도종 목사 이야기와 함께 그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대정교회를 소개하려 한다.

대정교회는 제주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지금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곳이 이도종 목사의 마지막 사역지라는 것을 염두하고 그의 사역지를 살펴보자.

이도종 목사의 사역지는 협재, 법환, 고산과 같이 철저히 제주의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었다. 제주도민의 풍습과 민간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고, 외지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유독 심한 지역들이다. 생활환경의 척박함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곳이었다. 그런데도 이도종 목사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목회활동을 펼쳤다.

이도종 목사는 목회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였다. 이전에 사역 하던 김제읍에서 300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로 성공적인 목회 경향이 있었다. 또한 충분히 안정된 목회지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상태였음에도(목회자가 부족한 제주도는 좋은 조건으로 목회자를 모시려는 자립교회들이 있었다) 시무하던 교회가 자립 여건을 갖추면 또 다른 열악한 외곽지역을 찾아 옮겨 다녔다. 그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제주도에 10개의 교회 개척, 21개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 이도종 목사의 교회 개척과 섬김 속에는 제주민을 향한, 그것도 소외된 외곽지역의 민간신앙에 얽매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곳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

이도종 목사의 목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 양육을 위한 가르침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육에 힘썼다. 둘째, 제주도라는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이도종 목사 스스로 제주인이었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들이 가진 토착신앙과 우상숭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쳤다.

교회도 제주43사건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도종 목사 역시 당시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다. 이도종 목사의 유해는 대정교회 앞마당에 묻혀 있다. 자신의 출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애정과 열정을 품고 자신이 지닌 배움과 은사를 지역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평생 사역했던 이도종 목사를 대정교회 앞마당에서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애정, 열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묵상하기를 바란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집사, 권사, 장로 임직 후보  
추천기준 변경

지난 9월 2일(토) 당회에서 ‘온누리교회 정관 규정 신설 및 개정’ 했다. 신설된 규정은 ‘임직 성도 및 일반 성도에 대한 권징 시행 규칙’이고, 개정된 규정은 ‘목사 청빙 및 위임에 대한 시행 규칙’, ‘임직자에 관

한 규정’, ‘임직자 후보 선발 시행 규칙’이다. 신설 및 개정된 규정 중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직 후보 추천기준 변경’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기준 구분   | 안수집사                                                                                                                      | 권사                                                                                                                                                       | 명예권사                                                                                                                                                                                                                    | 장로                                                                                                                                                                  | 명예장로                                                                                                                                                                                                                     |
|---------|---------------------------------------------------------------------------------------------------------------------------|----------------------------------------------------------------------------------------------------------------------------------------------------------|-------------------------------------------------------------------------------------------------------------------------------------------------------------------------------------------------------------------------|---------------------------------------------------------------------------------------------------------------------------------------------------------------------|--------------------------------------------------------------------------------------------------------------------------------------------------------------------------------------------------------------------------|
| 연령      |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 만 7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                                                                                                                                                    | 만 70세 이상(매년 2월말일 기준)                                                                                                                                                                                                     |
| 세례일     | 5년 이상 경과                                                                                                                  | 8년 이상 경과                                                                                                                                                 |                                                                                                                                                                                                                         | 7년 이상 경과                                                                                                                                                            |                                                                                                                                                                                                                          |
| 교회 등록일  | 5년 이상 경과                                                                                                                  | 8년 이상 경과 / 타 교회 권사는 3년 이상                                                                                                                                |                                                                                                                                                                                                                         | 5년 이상 경과                                                                                                                                                            |                                                                                                                                                                                                                          |
| 기본 양육과정 | 큐티스쿨을 이수한 자                                                                                                               |                                                                                                                                                          |                                                                                                                                                                                                                         |                                                                                                                                                                     |                                                                                                                                                                                                                          |
| 집사 임직 후 |                                                                                                                           | 3년 이상 경과                                                                                                                                                 |                                                                                                                                                                                                                         | 3년 이상 경과                                                                                                                                                            |                                                                                                                                                                                                                          |
| 일대일 양육  | (1) 일대일 양육을 3명 이상 완료하거나<br>(2) 양육을 2명 완료하고 특별봉사나 사역참여를 2년이상 완수한 자                                                         | 집사 안수 이후, 일대일 양육 1회 이상 완료                                                                                                                                |                                                                                                                                                                                                                         | 집사 안수 이후, 일대일 양육 1회 이상 완료                                                                                                                                           |                                                                                                                                                                                                                          |
| 양육과정 이수 | 필수선택 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자유선택과목을 함께 이수하여, 총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집사 안수 이후, 4학점 이상 이수 완료                                                                                                                                   |                                                                                                                                                                                                                         | 집사 안수 이후, 4학점 이상 이수 완료                                                                                                                                              |                                                                                                                                                                                                                          |
| 특별 조건   |                                                                                                                           | 집사 안수 이후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만족<br><br>(1) 사역본부 내 사역팀의 팀원으로 2년 이상 섬긴 자<br>(2) 소속 공동체의 사역자로 2년 이상 섬긴 자(순장, 다락방장, 새가족사역자, 장례사역자, 찬양사역자, 일대일연결사역자, 양육사역자, 예배사역자 등)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공동체에서 캠퍼스 담당 목사에게 추천하고, 캠퍼스 운영위원회는 당회운영위에 직접 추천서를 접수함<br><br>·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각 캠퍼스에서는 교회 또는 사회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는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캠퍼스당 1명까지(서빙고, 양재 2명) 캠퍼스 운영위원회가 당회운영위로 직접 추천서를 접수함 | 집사 안수 이후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만족<br><br>(1) 사역본부 내 사역팀의 팀장으로 2년 이상 섬긴 자<br>(2) 소속 공동체의 총무나 양육총무로 2년 이상 섬긴 자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공동체에서 캠퍼스 담당 목사에게 추천하고, 캠퍼스 운영위원회는 당회운영위에 직접 추천서를 접수함<br><br>·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각 캠퍼스에서는 교회 또는 사회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는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캠퍼스당 1명까지(서빙고, 양재 2명) 캠퍼스 운영위원회가 당회운영위로 직접 추천서를 접수함. |
| 공통      |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br>·심일조 및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br>·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br>·이단, 사이비 등과 무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없는 자 |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br>·심일조 및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br>·공동체(캠퍼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br>·이단, 사이비 등과 무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없는 자                           |                                                                                                                                                                                                                         |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br>·심일조 및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br>·공동체(캠퍼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br>·동일 공동체(또는 사역본부)에서 2회까지만 피추천이 가능함<br>·이단, 사이비 등과 무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없는 자 |                                                                                                                                                                                                                          |



온누리교회 협력 농어촌교회에서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대상자들에게 전달 할 '감사의 쌀'을 준비하고 있다.

##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마감

10월 8일까지 현금 봉헌 및 대상자 선정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 봉헌 및 대상자 선정을 마감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와 순은 10월 8일(일)까지 '감사의 쌀' 현금 봉헌 및 나눔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현금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5천원)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봉헌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잊지 말고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다른 캠퍼스 송금 계좌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온누리공동체 소속 성도, 외부 기관,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하면 된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공동체 담당 목사나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10월 8일(주일)까지 공동체 이름으로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3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NGO 더멋진세상, 모로코 긴급 지원

지진피해 지역에 생필품 및 의료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모로코 지진 피해 지역에 생필품과 위생용품, 의료품 등을 긴급 지원한다. 모로코에서 사역하는 온누리협력 선교사를 통해 지진피해 100가정(약 400명)에 긴급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진피해가 큰 아미지미즈, 우르간, 이주카크, 쉬와와에 천막, 담요, 매트리스, 텐트 팔레트 등을 우선 전

달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9월 29일부터 천막과 텐트 팔레트 300개를 트럭에 싣는 등 긴급구호를 시작했다. 10월 중에 지진피해 지역을 2차 방문해서 긴급구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문의: 02-2271-2246

## 온라인커뮤니티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

10월 23일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를 개최한다. 10월 23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직큐레이터)가 '인생'을 주제로 한 작품을 소개한다.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구글폼(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10월 11일(수)까지 온라인커뮤니티 계좌(하나은행 573-9100020-4330

5)로 티켓 비용 3만 원(2인)을 입금하면 된다. 입금 선착순 140명을 모집한다.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에서는 '인생'을 주제로 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감상할 수 있다.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묵상할 좋은 기회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la vie'



## 사회선교본부 사역자 모집

다문화사역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과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에서 사역자를 모집한다. 다문화사역팀에는 '다문화 사역 기획', '다문화 가정 섬김',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등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찾고,

지원한다. 김희성 팀장(010-6214-5432)에게 '위기가정 발굴팀 지원자'라고 이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문의: 사회선교본부 (02-3215-3434)



다문화사역팀 신청 QR

## 10월 화요성령집회 'KEYMAN'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0월 화요성령집회가 'KEYMAN'을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10일 이서진 목사 '순종의 K

EYMAN' (룻 3:1~18), 17일 최성민 목사 '믿음의 KEYMAN' (삼상 17:41~49), 24일 최성민 목사 '섬김의 KEYMAN' (마 20:20~28), 31일 최성민 목사 '희생의 KEYMAN' (렐 2:12~17)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 QT를 더욱 풍성하게 방법!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잠언 개관 영상

두란노서원에서 QT를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돕는 <생명의 삶> 잠언 개관 영상을 제작했다. 두란노서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생명의 삶> 잠언 개관 영상은 올해 10~12월 QT 본문인 <잠언>을 이

해하기 쉽게 살펴보는 영상이다. 권호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 저자)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00

## 256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256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7일(금)부터 3주 동안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주차별로 2강씩 업로드된다. 교재는 커플당 1권씩 PDF파일로 제공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263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강생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7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 일.하세. 아카데미 'Home Coming Day'

1기부터 19기 수료생 50여 명 참석

일.하세. 아카데미 7주년 기념 'Home Coming Day'를 지난달 23일(토) 개최했다. 1기부터 19기까지 수료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하세. 아카데미 'Home Coming Day'에서는 방선기 목사가 '일터 속 성령 열매'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로잔대회와 사회참여, 일터신앙'을 주제로

특강했다. 수료생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현미 성도(양재브릿지33+공동체)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는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 Love Sonata - 이야기 기 · 도 · 제 · 목
- 10월 8일(주일) · 러브소나타 '마야기'를 통해 일본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과 야기페 사랑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그 땅에 흘렸던 순교의 피가 증거되어 기독교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 10월 9일(월) · 모든 스테프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일본의 영적 필요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비를 온전히 깨달아 러브소나타 모든 과정에 복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 10월 10일(화) ·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는 스테프와 참가자, CGN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출국, 통관,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하시고, 행사장에 장비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설치되기를
  - 10월 11일(수) · 한국 참가자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를
  - 10월 12일(목) ·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일본인들에게 복음과 위로부터 전해져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 체험하기를
  - 10월 13일(금) · 일본 땅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의 길을 결단하는 사람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 10월 14일(토) · 내년 열릴 러브소나타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정을 쏟아내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기를

# 온누리교회 정관

## 정관 개정 취지

2018년도에 개정된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담임목사는 3년의 임기로 시무하시는 목사님으로 위임목사는 70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목사님으로 구별하게 된다. 한국교회 내에서 담임목사라는 명칭이 익숙하므로 성도들은 편한 대로 호칭해도 된다. 그러나, 대외적인 문서에는 위임목사로 개칭하게 된다. 둘째, 성도 및 임직자에 대한 권징 절차가 마련되었고, 셋째, 목사님, 장로님의 휴무 제도를 명확히 하였다. 정관 개정에 따라서 목사 청빙 절차에 대한 규정, 임직자 규정 및 권징 규정이 같이 마련되었다.

〈2023년 9월 2일 당회 승인〉 붉은색 Text는 2018년도 개정된 정관에서 변경된 부분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라 칭한다. 영어로는 “Onnuri Church”로 표기한다.

### 제2조 (소재지)

본 교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표방하고, 복음전도와 선교(해외선교, 사회선교)를 통하여 온누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교회의 주권)

-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 본 교회정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 제2장 교인

### 제5조 (교인의 자격)

- 본 교회가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성도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된다.
- 본 교회의 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 제6조 (책임)

본 교회의 교인은 예배와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책임을 진다.

### 제7조 (권리)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입교, 이하 같다)교인은 본 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교회의 제직회, 공동의회 등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3장 심의 및 의결기관

### 제8조 (공동의회)

- 공동의회는 만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 정기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의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당회장이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고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임한다.
- 공동의회는 의장이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의회 권한은 아래와 같다.
  -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 위임목사 청빙 및 위임 청원**
  -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제9조 (제직회)

- 제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로 구성한다.
- 제직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제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 당회장이 제직회의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여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직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직회는 당회가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10조 (당회)

- 당회는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 당회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기 유고시 당회운영위원 장로 중 최연장자가 서기를 대행한다.
- 당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재직 당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직 당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공동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청빙시 최종후보자 결정**
  - 위임목사의 노회로의 위임승인 요청**
  -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위원의 선출과 해임
  -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교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제11조 (당회운영위원회)

- 당회운영위원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장로 운영위원 및 당회장이 지명하는 부목사 2인으로 구성하고, 당회장은 당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당회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외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당회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당회운영위원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당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 당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
  -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임직 후보자 추천
  - 기타 당회가 위임한 사항
-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 (당회분과위원회)

- 당회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명칭, 역할, 구성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당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당회분과위원회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실행하고, 그 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 제4장 직분

### 제13조 (직분의 종류)

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를 둔다.

### 제14조 (목사)

-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②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당회장으로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 ③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당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장로)

-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가 위임한 사역 및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며,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 ②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4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노회 및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장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은퇴한 장로와 명예장로 및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⑤ 장로의 종류, 호칭,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권사)

- ①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거나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 ②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50세 이상의 여성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여성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권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②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3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8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등)

- ① 본 교회의 장로(명예장로, 협동장로 포함), 권사(명예권사 포함), 안수집사의 자격, 선발절차와 임직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9조 (전도사)

- ①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도사의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

- ①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
  -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 4)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 ②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 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 조항을 준용한다.
  - 2)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 3)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 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 5) 사임과 사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는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21조 (캠퍼스교회)

- ① 본 교회는 국내에 캠퍼스교회를 두고, 캠퍼스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

와 사역을 담당한다.

- ② 캠퍼스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 ③ 캠퍼스교회 목사(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와 재정,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④ 캠퍼스교회에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⑤ 캠퍼스교회의 설치와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고,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비전교회)

- ① 본 교회는 해외에 비전교회를 두고, 비전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와 사역을 담당한다.
- ② 비전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 ③ 비전교회는 교인총회를 두고, 비전교회 교인은 그 회원이 된다.
- ④ 비전교회 목사의 인사와 장로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과 권사·안수집사 임직은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 ⑤ 비전교회의 설치와 폐지, 분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⑥ 비전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책임목회제)

- 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교회는 본 교회의 부목사 또는 해당교회에서 임용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독립하여 운영하되,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교회와 그 운영방법은 당회가 정한다.

제24조 (Acts29 미션공동체 : AMA)

- ① 본 교회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교회, 그 외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AMA(Acts29 Mission Alliance)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각 지역별로 OMA(Onnuri Mission Alliance)를 둘 수 있다.
- ② AMA에는 최고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책임목회제를 시행하는 비전교회는 원칙적으로 AMA(또는 OMA, 이하 같다) 소속으로 하고, 당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교회를 AMA에 소속하게 하거나 AMA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본 교회는 AMA 소속 교회와 상호교류 및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힘쓰고, 이를 위해 AMA 또는 그 소속교회에게 적절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협력관계)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교회나 기도처 등이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서 그 교회 등과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26조 (공동체)

- ① 본 교회(캠퍼스교회 포함, 이하 같다)는 공동체를 둘 수 있고, 공동체에는 다락방과 순을 둘 수 있다.
- ② 공동체에 담당목사를 둔다.
- ③ 공동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④ 공동체의 구성, 분리,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사역본부)

- ① 본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본부(사역부서 포함,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 ② 사역본부에 본부장 또는 책임자를 둔다.
- ③ 사역본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은 당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인 및 기관·단체

제28조 (법인·기관·단체)

- ① 다음은 본 교회 산하에 있거나 본 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기관, 단체들(이하 “유관기관”이라고 칭한다)이다.
  - 1.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2.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3. CGNTV
  - 4. 두란노해외선교회
  - 5. 사단법인 더멋진세상
- ② 본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그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본 교회는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유관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29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8조의 유관기관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 ① 제28조의 유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 또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임명 또는 해임
  2. 이사, 위원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3. 부동산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 등 소유재산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4. 당회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제1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유관기관의 대표자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31조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 교회의 재정운영은 수입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 ③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지출에 관하여는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예산·결산)

- ① 본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해마다 직전 연도 12월 중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집행예산의 결산은 이듬해 2월 내에 당회와 제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33조 (재정위원회)

- ① 본 교회는 재정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는 본 교회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정위원은 당회장, 재정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재정위원회는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심의·편성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직전 연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재정위원회 산하에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하여 예결위원회를 둔다.
- ⑦ 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감사 및 감사위원회)

- ① 본 교회는 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감사는 당회장 또는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
- ③ 감사위원장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재산의 취득과 관리)

- ① 교회가 취득한 재산은 교회의 소유로 하되, 교회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명의로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다.
- ② 본 교회 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방법과 절차는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재산의 관리는 재정위원회가 주관하되, 온누리선교재단 또는 재정전담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권징

제36조 (당회 기소위원회)

- 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교 헌법 제3편 권징의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과를 발견한 경우, 소속 공동체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재판을 시행한다.

- ② 기소는 피고소인 소속 공동체의 운영위원회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성립되며, 당회에서 서면으로 접수함으로써 당회에서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 ③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7조 (당회 처리위원회)

- ① 기소위원회는 기소의뢰 접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할 경우 당회 처리위원회에 재판을 이첩한다.
- ②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처리위원회의 선고는 견책, 근신, 참여정지, 출교로 한다. 당회는 선고 기록을 교적부에 기입한다.

제38조 (권징에 대한 시행규칙)

고소/고발 및 재판, 선고의 과정은 장로교 헌법에서 정한 규례를 따른다. 기소위원회와 처리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당회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39조 (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교회의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40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

당회는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총회 헌법과의 관계)

권징 및 그 외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6.)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23.9.2.)

제1조 (효력 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끝)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 신·구 대조표

| 위치                              | 개정 전 정관 (2018년12월16일)                                                                                                                                                                                                                                               | 개정 후 정관 (2023년9월2일 당회 의결)                                                                                                                                                                                                                                                                                                                                                                                                                                      |
|---------------------------------|---------------------------------------------------------------------------------------------------------------------------------------------------------------------------------------------------------------------------------------------------------------------|----------------------------------------------------------------------------------------------------------------------------------------------------------------------------------------------------------------------------------------------------------------------------------------------------------------------------------------------------------------------------------------------------------------------------------------------------------------|
| 제8조<br>(공동의회)<br>5항             | ⑤ 공동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br>1.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br>2.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br><b>3. 담임목사 위임</b><br>4.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br>5.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⑤ 공동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br>1.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br>2.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br><b>3. 위임목사 청빙 및 위임 청원</b><br>4.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br>5.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 제10조<br>(당회)<br>1,2,5,6항        | ① 당회는 <b>담임목사</b> ,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br>② <b>담임목사</b> 가 당회장이 되고, <b>담임목사</b>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 ① 당회는 <b>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b> ,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br>② <b>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b> 가 당회장이 되고, <b>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b>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
|                                 | 없음                                                                                                                                                                                                                                                                  | <b>⑤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b>                                                                                                                                                                                                                                                                                                                                                                                                             |
|                                 | ⑤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br>1. 공동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br>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br>3. 담임목사 청빙시 최종후보자 결정<br>4.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위원의 선출과 해임<br>5.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br>6. 교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br>7.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⑥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br>1. 공동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br>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br><b>3.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청빙시 최종후보자 결정</b><br><b>4. 위임목사의 노회로의 위임승인 요청</b><br><b>5</b>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위원의 선출과 해임<br><b>6</b>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br><b>7</b> 교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br><b>8</b>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 제14조<br>(목사)<br>2,3,4,5항        |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br>② <b>담임목사</b> 는 당회장으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br>③ <b>담임목사</b> 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당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br>④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b>당회가 별도로 정한다.</b> |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br>② <b>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당회장으로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b><br>③ <b>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b><br>④ <b>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b> 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당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br>⑤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b>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b> |
| 신설 제20조<br>(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 | 없음                                                                                                                                                                                                                                                                  | <b>제20조 (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임(직))</b><br>①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br>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특별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br>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신설 제20조<br>(목사, 장로의 휴무 및 사직)    | 없음                                                                                                                                                                                                                                                                  | 3)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br>4)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
|                                 | 없음                                                                                                                                                                                                                                                                  | ②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br>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조항을 준용한다.<br>2)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br>3)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br>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br>5) 사임과 사직 및 복직에 대한 절차는 당회가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 <b>제20조</b><br><b>제21조</b>                                                                                                                                                                                                                                          | <b>제21조</b><br><b>제22조</b>                                                                                                                                                                                                                                                                                                                                                                                                                                     |

| 위치                                       | 개정 전 정관 (2018년12월16일)                                                                               | 개정 후 정관 (2023년9월2일 당회 의결)                                                                                                                                                                                                                                 |
|------------------------------------------|-----------------------------------------------------------------------------------------------------|-----------------------------------------------------------------------------------------------------------------------------------------------------------------------------------------------------------------------------------------------------------|
| 제23조<br>(책임목회제)                          | <b>제22조</b> (책임목회제)<br>① <b>제20조</b> 및 <b>제21조</b> 의 교회는                                            | <b>제23조</b> (책임목회제)<br>① <b>제21조</b> 및 <b>제22조</b> 의 교회는                                                                                                                                                                                                  |
| 제24조<br>(Acts29 미션 공동체 :AMA)<br>2항       | ② AMA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은 본 교회 <b>담임목사</b> 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② AMA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은 본 교회 <b>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b> 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 제25조<br>(협력관계)                           | <b>제20조에서 제23조</b> 까지의 (이하 생략)                                                                      | <b>제21조에서 제24조</b> 까지의 (이하 생략)                                                                                                                                                                                                                            |
| 조항 번호 변경<br>(제20조 신설로)                   | <b>제25조</b><br><b>제26조</b><br><b>제27조</b>                                                           | <b>제26조</b><br><b>제27조</b><br><b>제28조</b>                                                                                                                                                                                                                 |
| 제29조<br>(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 <b>제28조</b>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br><b>제27조</b>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 <b>제29조</b>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br><b>제28조</b>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
| 제30조<br>(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 <b>제30조</b>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br>① <b>제28조</b>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 <b>제30조</b>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br>① <b>제28조</b> 의 유관기관은 (이하 생략)                                                                                                                                                                                              |
| 조항 번호 변경<br>(제20조 신설로)                   | <b>제30조</b><br><b>제31조</b><br><b>제32조</b><br><b>제33조</b><br><b>제34조</b>                             | <b>제31조</b><br><b>제32조</b><br><b>제33조</b><br><b>제34조</b><br><b>제35조</b>                                                                                                                                                                                   |
| 신설 제8장<br>제36조, 제37조, 제38조               | 없음                                                                                                  | <b>제8장 권징</b><br><br><b>제36조 (당회 기소위원회)</b><br>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교 헌법 제3편 권징의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과를 발견한 경우, 소속 공동체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재판을 시행한다.<br>② 기소는 피고소인 소속 공동체의 운영위원회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성립되며, 당회에 서면으로 접수함으로 당회에서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br>③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                                          | 없음                                                                                                  | <b>제37조 (당회 처리위원회)</b><br>① 기소위원회는 기소의뢰 접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할 경우 당회 처리위원회에 재판을 이첩한다.<br>② 당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br>③ 처리위원회의 선고는 견책, 근신, 참여정지, 출교로 한다. 당회는 선고 기록을 교적부에 기입한다.                                                                       |
|                                          | 없음                                                                                                  | <b>제38조 (권징에 대한 시행규칙)</b><br>고소/고발 및 재판, 선고의 과정은 장로교 헌법에서 정한 규례를 따른다. 기소위원회와 처리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당회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조항 번호 변경<br>(제2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신설로) | <b>제8장 기타</b><br><b>제35조</b><br><b>제36조</b><br><b>제37조</b><br><b>제38조</b>                           | <b>제9장 기타</b><br><b>제39조</b><br><b>제40조</b><br><b>제41조</b><br><b>제42조</b>                                                                                                                                                                                 |
| 부칙 추가                                    |                                                                                                     | <b>부칙 (2023.9.2.)</b><br><b>제1조 (효력 발생)</b><br>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br><b>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b><br>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                                          |                                                                                                     | <b>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b><br>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br><b>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b><br>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

